

제 호

## 시험·검사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 :

2. 대표자 :

3. 소재지 :

4. 시험·검사 분야 :

5. 지정 유효기간 :

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·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직인

### 변경지정

변경일자

내 용